

■ 고등교육법 시행령 [별표 3의3] <개정 2024. 5. 21.>

재직경력 없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지정 기준(제62조의3제2항 관련)

기준	항 목	확보율
대학 전체	전임교원확보율	100
	교사확보율	100
모집 단위	전임교원확보율	60
	교원확보율(전임·겸임·초빙교원 포함)	100

비고

교사확보율 및 교원확보율은 각각 「사이버대학 설립·운영 규정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산정한다. 다만, 교사확보율을 산정할 때 산업체 경력 없이 입학 가능한 학위심화과정을 설치한 모집단위의 교사기준면적은 「사이버대학 설립·운영 규정」 별표 2 비교에도 불구하고 학사학위가 인정되는 사이버대학의 기준을 적용한다.